



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계획(안)

2001. 5

정치개혁특별위원회

#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계획

## 1. 목 적

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심사대상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함.

## 2. 안건 및 일시

일 시	건 명	진 술 인	비 고
'01. 5.15(火) 14:00	국회관계법개정에 관한공청회	6 인	
'01. 5.16(水) 14:00	정치자금법 · 정당관계법개정에 관한공청회	7 인	
'01. 5.17(목) 14:00	선거관계법개정에 관한공청회	7 인	

3. 장 소 : 특별위원회 회의실(본청 501호)

## 4. 안건별 발표내용

안 건	주 요 발 표 사 항
국회관계법개정에 관한공청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법</li> <li>○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</li> <li>○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 관한법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 구성요건</li> <li>- 의장당적 보유여부</li> <li>- 국회출석요구대상 공무원 범위확대 (검찰총장)</li> <li>- 인사청문회 대상확대(국가정보원장, 검찰총장)</li> <li>- 인사청문회 기간연장</li> <li>- 본회의·상임위·예결위운영 개선사항</li> </ul> </li> </ul>

안 건	주 요 발 표 사 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정감·조사, 증감제도 개선사항</li> <li>- 기타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</li> </ul>
정치자금법·정당관계법개정에 관한공청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치자금법</li> <li>○ 정당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읍·면·동 연락사무소 폐지</li> <li>- 선출직 공직자 탈당방지 문제 (지방의회의원 포함)</li> <li>- 당내공천 투명성 당규에 명문화</li> <li>- 정당간 연합공천 문제</li> <li>- 정당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</li> <li>- 법인세액 일정율의 정치자금 명문화</li> <li>-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등에 대한 제3자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 문제</li> <li>- 국고보조금 지출용도 제한 및 지급방식</li> <li>- 기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</li> </ul> </li> </ul>
선거관계법개정에관한공청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거의 공정성(선거운동의 기회균등)</li> <li>- 선거제도(석패율제도,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)</li> <li>- 4개지방선거 시기조정 문제</li> <li>- 장애인 투표제도 보완</li> <li>- 시민단체 선거운동</li> <li>- 선거비용 개념의 확대</li> <li>- 후보자 정보공개제도의 보완</li> <li>- 여성후보자의 의회진출 촉진방안</li> <li>- 선거공영제 확대</li> <li>-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방안</li> <li>- 선거사범의 특별검사 전담수사 문제</li> <li>- 장기거주 외국인 선거권부여 문제</li> <li>- 기타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</li> </ul> </li> </ul>

## 5. 진 술 인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인(국회관계법 공청회는 제외)
- 언론계(한국기자협회등)·법조계(대한변호사협회)·학계(한국정치학회등)에서 여·야 각 1인씩 추천

## 6. 기 조 발 표

- 각당 1인씩 기조발표 : 각 15분이내

## 7. 진 행 방 법

-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
- 공청회는 공개회의로 함
-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각 15분이내
- 질의는 특위 위원들만하고, 방청인은 위원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.
-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·답변순으로 진행

## 8. 세 부 일 정

시 간	진 행 순 서	비 고
14:00	○ 개 회	
14:00~14:30	○ 위원장인사(취지·회의진행 설명) 및 진술인 소개	
14:30~15:15	○ 기조발표(각당 1인씩)	
15:15~17:15	○ 진술인 발표(각 15분)	
17:15~19:00	○ 질의 및 답변	
19:00	○ 산 회	

## 9. 기타사항

### 가. 진 술 인

- 진술인에게 위원장명의 초청서한 발송
- 진술인은 공청회 5일전까지 진술요지서를 제출토록 함.
- 진술인에게는 국회예산에서 소정의 사례금 지급

### 나. 보도 및 촬영

- 공청회 상황을 TV녹화 및 라디오, 신문에서 취재·방영토록  
협조요청
- 공보국에 공청회진행 녹화 및 기록사진 촬영의뢰

### 다. 속 기

- 의사국에 속기 요청

### 라. 자료배포

- 진술요지서등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인쇄하여 배포함.

### 마. 방 청

- 공청회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위를 배치하고 방청권을 발행

### 바. 공청회 개최공고 및 안내문은 개최 3일전에 정문 및 본청게시판 에 공고